

Tax & Legal Alert

제48/QH15호 부가가치세법 지침을 위한 제181/2025/ND-CP호 시행령 및 제69/2025/TT-BTC호 시행규칙의 주요 조항

2025년 7월



제48/QH15호 부가가치세법 지침을 위한 제181/2025/ND-CP호 시행령 및 제69/2025/TT-BTC호 시행규칙의 주요 조항

2025년 7월 1일, 정부는 제48/2024/QH15호 부가가치세법("VAT법")의 일부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과 지침을 규정한 제181/2025/ND-CP호 시행령을 공포한다. 같은 날, 재정부는 VAT법의 구체적인 조항 및 제181/2025/ND-CP호 시행령의 이행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제69/2025/TT-BTC호 시행규칙을 공포한다. 해당 규정들은 제48/2024/QH15호 VAT법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구체화함으로써, 법적 체계를 개선하고 기업들이 세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8/2024/QH15호 VAT법에 대한 업데이트는 [링크](#) 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시행일: 2025년 7월 1일



주요 조항

이번 뉴스를 통해 딜로이트 베트남은 제181/2025/ND-CP호 시행령 및 제69호 시행규칙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여러분께 공유하고자 한다. 특히 비관세지대에 직접 제공되는 수출용역, 현금이 아닌 방식의 결제 요건, VAT 환급 규정 등은 최근 기업 커뮤니티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핵심 이슈들이다.

이번 **뉴스에서** 다루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 VAT 면세 대상;
- ✓ VAT 과세표준;
- ✓ VAT 납세의무 결정 시점;
- ✓ 수출용 재화 및 용역에 대한 VAT 0% 세율 적용 범위;
- ✓ 현금이 아닌 결제 방식 요건;
- ✓ VAT 환급 및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세부 규정;
- ✓ 외국인 조직 및 개인에 대한 VAT 적용



제48/QH15호 부가가치세법 지침을 위한 제181/2025/ND-CP호 시행령 및 제69/2025/TT-BTC호 시행규칙의 주요 조항 (계속)



VAT 비과세 대상



비과세 대상에 대한 세부 규정

- ✓ **VAT 비과세 대상**은 주택, 신용기관 및 신용활동, 외교 등 다양한 업종별 개별 법령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식별한다.
- ✓ VAT가 면제되는 특정 재화 및 용역 그룹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이 제공된다**. 예를 들어, 다른 제품으로 가공되지 않았거나 단순한 전처리만 거친 재배 작물, 조림, 가축, 양식 또는 자연산 수산물, 지역 주민의 자발적 기부나 인도적 지원으로 수행되는 유지보수, 수리 및 건설 활동, 신문·잡지·서적의 출판, 수입 및 유통, 교육 및 직업훈련 활동 등이 이에 해당한다;
- ✓ 가공되지 않았거나 가공된 천연자원 및 광물에서 유래한 수출품 중, 정부의 수출 억제 또는 제한 정책에 부합하는 **품목 목록이 마련된다**. 이 목록에 해당하는 수출품은 VAT 과세 대상이 아니며, 수출 시 0% 율도 적용되지 않는다.

(제181/2025/ND-CP호 시행령, 제4조)



VAT 비과세 재화 및 용역의 결정에 대한 서류 및 절차 관련 규정

- 납세자는 VAT법 및 제181/2025/ND-CP호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VAT비과세 대상 재화 및 용역을 결정하여야 한다.
- 관계 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의 재화 또는 용역이 VAT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한다:
 - ✓ 종축(씨가축) 제품;
 - ✓ 수입된 신문, 잡지, 서적, 포스터 및 기타 인쇄물;
 - ✓ 인도적 지원 및 무상 원조 목적으로 베트남의 기관 및 개인에게 판매되는 상품 및 서비스;
 - ✓ 발명, 산업디자인, 배치설계도, 상표권에 대한 산업재산권 양도는 지식재산권 양도로 간주됨;
 - ✓ 식물 품종에 대한 권리 양도는 지식재산권 양도로 간주됨;
 - ✓ 재해, 전염병, 전쟁의 예방·대응·복구를 위한 기부 또는 후원 목적의 수입 물품.

(제 69/2025/TT-BTC호 시행규칙, 제3조)



제48/QH15호 부가가치세법 지침을 위한 제181/2025/ND-CP호 시행령 및 제69/2025/TT-BTC호 시행규칙의 주요 조항 (계속)



VAT 과세표준



VAT 과세표준 결정 원칙

- ✓ **VAT 과세표준에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 외에 추가로 받는 모든 부가금 및 추가 수수료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한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손해배상금, 상여금, 보험 업무에서 제3자로부터 회수한 금액, 타인을 대신하여 징수한 금액, 국가기관을 대신하여 자금을 징수하거나 지급한 대가로 받은 수수료, 금융수익 등이다;
- ✓ 사업자가 고객에게 상업적 할인을 적용하는 경우(있는 경우), **VAT 과세표준은 VAT를 제외한 할인 적용 후의 판매금액으로 한다**;
- ✓ VAT 과세표준이 관계 국가기관의 결론에 따라 조정되는 경우, **해당 결론에 근거하여 결정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 181/2025/ND-CP호 시행령, 제14조)



특수한 경우의 과세표준 결정

- ✓ 국내에서 판매되는 재화 및 용역, 수입 재화;
- ✓ 교환, 자가소비, 증여, 판촉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화 및 용역;
- ✓ 자산 임대, 위탁 가공, 건설 또는 설치 서비스 활동;
- ✓ 부동산 사업 활동;
- ✓ 상품 거래, 용역 중개 및 위탁판매 활동, 지급 금액이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상품 및 용역에 대한 대리 및 중개 활동;
- ✓ 카지노 영업, 경품 전자오락, 도박 영업 서비스;
- ✓ 전력 생산, 운송 및 하역 서비스, 여행·관광 서비스, 전당포 서비스, 인쇄 활동, 검사 대행 서비스 등 기타 생산 및 사업 활동;
- ✓ 국제 통신 서비스
- ✓ 베트남 외에 소재한 외국 조직 또는 개인이 제공하는 서비스

(제181/2025/ND-CP호 시행령, 제6조)



제48/QH15호 부가가치세법 지침을 위한 제181/2025/ND-CP호 시행령 및 제69/2025/TT-BTC호 시행규칙의 주요 조항 (계속)



납세의무 결정 시점

납세의무 결정 시점에 관한 규정은 세금계산서 발행, 관세법 및 기타 관련 전문 법령의 규정과 일치한다. 예를 들어:

- ✓ **수출 재화의 경우**, VAT 납세의무 결정 시점은 판매자가 결정하되, 관세법에 따라 통관이 완료된 다음 근무일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 ✓ **수입 재화의 경우**, VAT 납세의무 결정 시기는 수출입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세 납세의무 결정 시기와 동일하다;
- ✓ 일부 특정한 경우에는, **사업자 간 정산이 완료된 시점을 VAT 납세의무 결정 시기로 본다**. 예: 통신 서비스, 발전회사의 전력 판매, 상수도 공급 등.

(제 181/2025/ND-CP호 시행령의 제15조 & 제16조)



제48/QH15호 부가가치세법 지침을 위한 제181/2025/ND-CP호 시행령 및 제69/2025/TT-BTC호 시행규칙의 주요 조항 (계속)



0% VAT 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및 용역



0% VAT 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은

- 비과세구역에 소재한 조직에 직접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규정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 비과세구역 내에서 소비되며 수출 생산 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용역 그룹;
 - ✓ 운송 서비스, 컨테이너 처리 서비스, 상하차 서비스 등 특정 용역
- "비과세구역 내 조직에 판매 또는 제공되고 해당 구역 내에서 소비되어 수출 생산 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재화 및 용역"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 해당 재화 및 용역은 반드시 비과세구역 내에서 소비되어야 하며, 해당 구역 내 기관의 수출 생산 활동에 사용되어야 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 ✓ VAT 0% 세율 적용 제외 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 재무부는 국가의 행정관리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본 규정에 대한 세부 지침을 제공한다.



0% VAT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대상

2025년 7월 1일 이전의 VAT 규정과 비교하여, 0% VAT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일부 재화 및 용역군에 대한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 ✓ "신용 서비스", "자본 이전", "통신 서비스" 항목에서 "외국"이라는 문구를 삭제한다.
- ✓ "파생 금융 서비스"는 "파생상품"으로 수정한다.

(제 181/2025/ND-CP호 시행령, 제17조)



제48/QH15호 부가가치세법 지침을 위한 제181/2025/ND-CP호 시행령 및 제69/2025/TT-BTC호 시행규칙의 주요 조항 (계속)



0% VAT 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및 용역 (계속)



0% VAT 세율 적용 대상에 대한 서류 및 절차에 관한 규정

- ✓ 납세의무자는 VAT법 제9조 제1항 및 제181/2025/ND-CP호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0% VAT 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및 용역을 스스로 판단한다;
- ✓ 납세의무자는 특정 재화 및 용역에 대해 관할 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181/2025/ND-CP호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0% VAT 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관련 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또는 기타 특정한 경우에는, 관할 당국의 요청 시 납세의무자는 제181/2025/ND-CP호 시행령 제27조 및 제28조에 규정된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 69/2025/TT-BTC호 시행규칙 제4조)



비현금 결제 거래



기업은 물품 및 용역(수입물품 포함)을 구매할 때, VAT 포함 VND 5mil 이상인 거래에 대해서는 **비현금 결제 증빙을 보관해야 한다.**



비현금 결제에 사용되는 서류 및 수단의 유형은 2024년 제52/2024/ND-CP호 시행령 (비현금 결제에 관한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며, 구매자가 현금을 판매자의 은행 계좌에 직접 입금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현금 결제 서류 사용이 요구되는 특정 사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비현금 결제 증빙서류를 사용해야 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 ✓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매출 간 상계, 또는 대출·차입 간 상계하는 경우;
- ✓ 제3자를 통한 상계로서, 해당 제3자가 대출·차입 활동에 관여하는 경우
- ✓ 위임받은 제3자 또는 지정된 제3자를 통해 결제하는 경우
- ✓ 주식 또는 채권으로 결제하는 경우
- ✓ 강제집행 조치의 일환으로 국가금고(State Treasury)에 개설된 제3자의 계좌로 결제하는 경우;
- ✓ 5백만 VND 이상인 할부 또는 후불 조건의 구매 거래;
- ✓ 수입금액 또는 세금계산서 금액이 5백만 VND 미만이거나, 증정용·판촉용·샘플용 재화의 경우;
- ✓ 회사가 아닌 개인(직원 포함) 또는 직원이 아닌 자가 회사를 대신하여 결제하는 경우;
- ✓ 동일한 판매자로부터 동일한 날짜에 복수의 구매를 하여 총액이 5백만 VND 이상인 경우.

(제181/2025/ND-CP호 시행령, 제27조))



제48/QH15호 부가가치세법 지침을 위한 제181/2025/ND-CP호 시행령 및 제69/2025/TT-BTC호 시행규칙의 주요 조항 (계속)



VAT 환급



수출 재화 및 수출 용역에 대한 규정

특정한 경우에 있어 VAT 환급 대상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 ✓ **수출 위탁의 경우:** VAT 환급 대상은 수출을 위탁한 사업자이다.
- ✓ **연계 가공무역(onward processing)의 경우:** VAT 환급 대상은 외국 업체와 수출 가공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이다;
- ✓ **해외 건설사업 이행을 위한 수출의 경우:** VAT 환급 대상은 건설사업 이행을 위해 재화를 해외로 수출하는 사업자이다.
- “재화를 수입한 후 다른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란, 해외에서 베트남으로 수입된 재화를 직접 수출하거나 수출을 위탁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는 수출용 재화의 생산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수입 원자재는 포함하지 않는다.

(제181/2025/ND-CP호 시행령, 제29조)

- 수출과 내수 판매가 혼재된 경우, 수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환급 가능한 VAT를 산정하는 공식이 제공된다.

(제 69/2025/TT-BTC호 시행규칙, 부록 II)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 투자 프로젝트가 여전히 투자 단계에 있으며 생산 또는 영업 활동을 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료되어, 주요 생산 또는 영업 활동과 관련된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자는 세법 규정에 따라 이미 환급받은 VAT를 반환해야 한다.

(제181/2025/ND-CP호 시행령, 제30조)



제48/QH15호 부가가치세법 지침을 위한 제181/2025/ND-CP호 시행령 및 제69/2025/TT-BTC호 시행규칙의 주요 조항 (계속)



VAT 환급 (계속)



5% VAT 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의 생산 및 용역 제공의 경우

- ✓ 5% VAT 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의 생산 및 용역 제공과 기타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및 용역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의 안분 비율은, 5% VAT 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의 생산 및 용역 제공에 따른 수입과 해당 세금환급 기간의 총 과세 대상 수입 간의 비율로 산정한다;
- ✓ 세금환급 기간은, 5% 세율이 적용되는 항목에 대한 매입세액이 전액 공제되지 못해 계속 이월된 기간부터 세금 환급을 신청하는 VAT 과세기간까지로 판단한다;
- ✓ 5% VAT 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및 용역의 생산에 사용된 매입세액은, 다른 과세 대상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상계한 후, 환급 가능한 잔액이 3억 VND 이상인 경우 환급받을 수 있다.

(제181/2025/ND-CP호 시행령, 제31조)

- ✓ 수출과 내수 판매가 병행되는 경우, 수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환급 가능한 VAT를 산정하는 공식이 제공된다.

(제69/2025/TT-BTC호 시행규칙, 부록 III)



제48/QH15호 부가가치세법 지침을 위한 제181/2025/ND-CP호 시행령 및 제69/2025/TT-BTC호 시행규칙의 주요 조항 (계속)



외국인 조직 및 개인에 대한 적용

제69/2025/TT-BTC호 시행규칙은 외국인 계약자세(VAT 포함)에 관한 시행규칙 제103/2014/TT-BTC호의 일부 규정을 대체한다.

(제69/2025/TT-BTC호 시행규칙, 제10.3조)



베트남에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외국 조직 및 개인에 대한 VAT 적용 여부에 관한 규정

VAT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	VAT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대상
- 베트남에 고정사업장(PE)이 있는 외국 법인 또는 상설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 그리고 베트남 거주자 여부와 무관하게 베트남에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외국 개인; - 베트남 내에서 재화의 유통 또는 용역의 제공을 전부 또는 일부 수행하는 외국 단체; - 베트남 법인을 통해 계약을 협상하거나 체결하는 외국 단체; - 베트남에서 수출입, 유통, 재화 구매 후 수출, 또는 베트남 상인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외국 단체	- 베트남 법률에 따라 설립된 조직; - 부수적인 용역 없이 재화만을 공급하고, 인도 장소가 해외 또는 베트남 국경지역인 외국 조직 및 개인; - 다음과 같은 베트남 외에서 수행되는 특정 용역을 제공하는 외국 조직 및 개인: ✓ 운송수단 수리; ✓ 광고 및 마케팅 (단, 온라인 광고 및 온라인 마케팅은 제외) ✓ 무역 진흥 및 투자 장려 ✓ 해외에서의 재화 판매 및 용역 제공 중개; ✓ 교육 (단, 온라인 교육은 제외); ✓ 기타 용역: 국제 통신요금 정산, 위성 전송선 및 대역폭 임대, 국제 우편요금 정산 등 - 외국 조직 및 개인이 보세창고 또는 내륙통관기지(ICD)를 이용하여 국제 운송, 환적, 또는 다른 기업의 가공을 위한 재화 보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해외에서 수행되며 베트남 내에서 소비되지 않는 기타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외국 조직 및 개인



제48/QH15호 부가가치세법 지침을 위한 제181/2025/ND-CP호 시행령 및 제69/2025/TT-BTC호 시행규칙의 주요 조항 (계속)



외국인 조직 및 개인에 대한 VAT 적용 (계속)



VAT 납부세액 산정 방법

- ✓ 직접 계산 방식에 따라 매출액에 적용되는 VAT 계산 비율(%)은 시행규칙 제69호에 첨부된 부록I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 ✓ 여러 사업영역이 포함된 원청 계약 또는 하청 계약의 경우, 각 사업 활동별 VAT 과세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VAT를 산정한다. 다만, 각 사업 활동의 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업종 중 가장 높은 세율을 전체 계약 금액에 적용한다.



원청 계약(Contractor Contract) 및 하도급 계약 (Sub-contractor Contract) 정의

- ✓ **원청 계약(Contractor Contract):** 외국 원청업체와 베트남 측 당사자 간에 체결된 계약, 합의 또는 약정을 의미한다.
- ✓ **하도급 계약(Sub-contractor Contract):** 외국 원청업체와 하도급업체 간에 체결된 계약, 합의 또는 약정을 의미하며, 하도급업체는 외국 또는 베트남 업체일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제69/2025/TT-BTC호)



Deloitte Vietnam의 인사이트 및 기업을 위한 제언



Deloitte Vietnam의 인사이트

VAT 관련 법적 체계는 명확성과 실무 적용성 강화를 목표로 정비 중임

VAT 법 제48/2024/QH15호를 안내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동시에 공표되면서, 관계 당국이 VAT 규제 체계를 정합적으로 정비하려는 노력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실무에서 불확실성을 유발했던 0% VAT 적용 요건, VAT 환급, 비관세지대 관련 개념 등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규정으로 보완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업들이 관련 규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법적 환경이 점차 투명해짐에 따라, 단순한 '정확한 신고'를 넘어 '선제적인 준법 관리' 마인드가 기업에 요구됨

이제 규정 준수는 단순히 요건을 갖춘 서류를 준비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기업은 VAT 세율 적용 및 매입세액 공제 자격을 충족하기 위해 세무, 회계, 수출입, 법무 등 관련 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업 체계와 견고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전반적인 경영 효율성과 규정 준수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수출가공기업(EPE)에 제공되는 수출용역은 적정 VAT 세율 적용 여부를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정된 VAT 법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서는 '수출용역'의 정의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도입하고 있으며, 특히 소비지(location of consumption), 실질 수혜자, 증빙 서류에 대한 요건이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출가공기업(EPE)에 제공되는 많은 용역이 더 이상 0% VAT 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해당 기업들의 원가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EPE에 제공되는 수출용역의 실질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VAT 세율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Deloitte Vietnam의 인사이트 및 기업을 위한 제언 (계속)



기업 커뮤니티를 위한 Deloitte의 제언 (계속)

전반적인 조세 규제 체계, 특히 VAT 규정의 대대적인 개편 흐름 속에서, 기업들은 아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 적용 가능한 VAT 세율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상품 및 용역 전체 목록을 재검토한다.**
- ✓ **해외 및 비관세지대에 수출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0% VAT 적용 요건 검토:** 2025년 7월 1일 이전 규정과 비교하여, 수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0% VAT 적용 요건이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 다만,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세무당국과 납세자 간 해석이 상이할 수 있다. 특히 외국기관에 제공되었으나 국내에서 사용되는 용역 또는 비관세지대에 제공되는 용역의 경우, 새로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계약서, 수출 증빙, 문서화 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 ✓ **회계 시스템 및 내부 관리 소프트웨어의 적합성 검토:** VAT 공제 및 환급 관련 변경사항은 세금계산서 처리, 매입세액 회계 반영, 수익 인식 방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회계 부서 및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와 협력하여 관련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규정에 따른 자동화된 정확한 준수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 **내부 규정을 업데이트하고, 세무·회계 및 관련 부서 직원 교육을 강화:** 최신 규제 변화에 맞추어 내부 정책과 절차를 신속히 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회계·세무 및 관련 운영 부서를 대상으로 실무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 자문인과 선제적으로 협업:** 조세 정책의 지속적인 변화와 업종 및 비즈니스 모델별 적용 방식의 차이를 고려할 때, 심도 있는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보유한 신뢰할 수 있는 자문인과의 협의를 통해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규정 준수 및 세무 최적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Vietnam Tax Firm
of the Year
(2021 - 2024)



Contact us

Vietnam Korean Service Group

Deloitte Global Korean Services Group(KSG)의 일원으로서, 베트남 KSG는 한국 기업들이 해외로 확장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적 및 언어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회계, 세무, 재무 자문 및 컨설팅을 포함한 폭넓은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는 베트남에서 운영 중인 한국 기업들의 요구에 맞춰 설계되었습니다. 하노이와 호치민시에 상주하는 한국어 구사 전문가를 포함한 전담 팀이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안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는 한국 기업의 고유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통합적이고 맞춤형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근 회계사

KSG Leader – HCMC office

+84 901 197 014

keunslee@deloitte.com



류경석 회계사

Tax Director – Hanoi office

+ 84 96 227 8254

kyungryu@deloitte.com



To stay informed with our previous newsletters – visit:
[Deloitte's website](https://www.deloitte.com)

*Deloitte's Tax & Legal Alert is intended for reference purposes only
and is not for distribution or resale.*



**Vietnam Tax Firm
of the Year
(2021 – 2024)**



Contact us



Bui Tuan Minh

Country Tax & Legal Leader
+84 24 7105 0022
mbui@deloitte.com



Bui Ngoc Tuan

Tax Partner
+84 24 7105 0021
tbui@deloitte.com



Dinh Mai Hanh

Tax Partner
+84 24 7105 0050
handinh@deloitte.com



Vu Thu Nga

Tax Partner
+84 24 7105 0023
ngavu@deloitte.com



Vu Thu Ha

Tax Partner
+84 24 710 50024
hatvu@deloitte.com



Pham Quynh Ngoc

Legal Partner
+84 24 710 50070
ngocpham@deloitte.com



Thomas McClelland

Tax Partner
+84 28 7101 4333
tmcclelland@deloitte.com



Phan Vu Hoang

Tax Partner
+84 28 7101 4345
hoangphan@deloitte.com



Vo Hiep Van An

Tax Partner
+84 28 7101 4444
avo@deloitte.com



Tat Hong Quan

Tax Partner
+84 28 7101 4341
quantat@deloitte.com



Dang Mai Kim Ngan

Tax Partner
+84 28 710 14351
ngandang@deloitte.com



Tran Quoc Thang

Tax Partner
+84 28 710 14323
qthang@deloitte.com



Vu Minh Ngoc

Tax Partner
+84 28 7101 4645
ngocmvu@deloitte.com



To stay informed with our previous newsletters – visit:
[Deloitte's website](https://www.deloitte.com/vietnam)

*Deloitte's Tax & Legal Alert is intended for reference purposes only
and is not for distribution or resale.*

Office

Hanoi Office

15th Floor, Vinaconex Building,
34 Lang Ha Street, Lang Ward,
Hanoi, Vietnam
Tel: +84 24 7105 0000
Fax: +84 24 6288 5678

Ho Chi Minh City Office

18th Floor, Times Square Building,
57-69F Dong Khoi Street, Sai Gon Ward,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 28 7101 4555
Fax: +84 28 3910 0750

Deloitte.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Bengaluru,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Mumbai, New Delhi,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About Deloitte Vietnam

In Vietnam, services are provided by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each of which may be referred to or known as Deloitte Vietnam.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